

# 초등교사의 저작권 지식수준 분석을 통한 교육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김자미\* · 박정호\*\* · 이원규\*\*\*

고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교육학과\* · 서울디지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 요 약

학교현장에서 교육정보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교사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법 위반 피소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대상의 저작권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사들의 교육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저작권에 대한 지식수준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교사 349명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저작권교육 여부 보다는 교육용콘텐츠 제작 경험 여부에 따라 저작권 지식은 차이를 보였다. 즉,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었을 때, 해당 지식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저작권 교육이 하나의 지식으로 교육되기 보다는 교육정보가 활용되는 상황에 적합한 저작권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키워드: 저작권, 저작권 지식, 교육정보

## A Study of the Copyright Knowledg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Association with the Utilization of Education Information

Ja-Mee Kim\* · Jung-Ho Park\*\* · Won-Gyu Lee\*\*\*

Dept. of Computer Scie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  
Seoul Digital University\*\* · Dept. of Computer Science Education, Korea University\*\*\*

## ABSTRACT

As a lot of education information are increasingly utilized in the educational sector, there is a consequ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that file an ac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copyright law. Copyright education is provided to teachers in diverse ways, but they aren't well aware of it actu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pyright knowledge of teachers in a bid to determine whether they knew well about what they had to do or no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349 elementary school teachers. After their knowledge was evaluated, it's found that they we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copyright knowledge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of producing educational contents rather than educational experiences about copyright. Although they ever received education on copyright, they were better knowledgeable about that when they actually made use of educational information at their own request.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down-to-earth, authentic and context-specific copyright education would be more effective than just theoretical one.

Keywords: Copyright, Copyright Knowledge, Education Information

\* 교신저자 : 이원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논문투고: 2011-03-15

논문심사: 2011-03-28

심사완료: 2011-04-20

## 1. 서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검색을 활성화하였고,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해졌고, 교사들에게 수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교사들에게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었다 [15]. 1996년에 처음 개통한 국가 교육정보화 사업으로서 예뉘넷은 교육정보종합서비스 시스템으로써 교사들의 수업자료를 비롯하여 교원연구 성과의 공유 및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교육정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업자료나 연구 및 연수자료, 평가문항 서비스 등을 통해 수업에서 교육정보 활용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2].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정보화 사업은 학교에서의 e-러닝과 u-러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수업에서 ICT 도구뿐 만아니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사들은 수업목적의 자료들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업자료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와 시간 제약 등의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정부산하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1]. 반면, 교육정보 이용 활성화는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다양한 교육저작물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육관련 저작권법의 이해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인터넷을 활용해 수업자료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위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경우, 수업자료 제작 및 활용을 위해 교육관련 사이트를 활용하는 비율이 이미 80%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9]. 저작권침해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송, 전시, 배포하여 원저작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다양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인터넷에서 저작권 위반 및 침해의 위험이 적지 않다

[4]. 따라서 교사들의 교육관련 저작권에 관한 지식 수준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2009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년은 2만 2천명에 이른다[30]. 또한 교사들의 저작권 관련 위반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31]. 이것은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저작권관련 연구들은 주로 국가지식정보의 유통과 관련하여 교육정보의 유통현황 분석, 공공교육정보서비스 개선방안, 교육정보의 자유이용체제 구축 등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10][14][15][17][19]. 반면, 학교교육에서 교육정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자료의 생성 및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정보 활용을 위해 인지하고 있어야 할 교육관련 저작권법 인식에 관한 연구도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정보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교사들의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위반 현황

교사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법 위반 피소 사례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법 관련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교사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위반 피소 사례로 ‘가정통신문도 저작권법 걸린다’, ‘교사 상대 저작권 위반 사기극’, ‘묻지마식 저작권 소송\_선생님까지 소송’ 등이 있다[27][28][29].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소 사례를 계기로 각 시·도 교육청은 2010년 저작권 연구학교를 50개로 확대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관련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저작권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21][23][24].

한편, 교사들이 교육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저작권 침해 및 위반 사례를 고려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6년 오프라인 교사 연수를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온라인 교사 연수 등을 통하여

2009년 10월 기준으로 17,313명을 교육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기준 전국의 교사가 367,390명임을 고려하면 4.29%에 불과한 인원이다. 따라서 모든 교사에게 저작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18].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정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작권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의 노력도 시행되었다[20].

교사들의 교육정보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저작권 교육과는 별개로, 저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운동도 전개되었다. 즉,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클린지수(clean index)를 개발이 그것이다[16]. 저작권은 창작자의 인격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창작을 진흥하여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면 보호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인식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저작권이 개인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법률에 의해서만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3]. 따라서 어디까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와 허용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증대되고 있고, 교사들을 위한 지원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작권 관련 인식 확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실제 '수업목적과 수업지원'의 범위가 모호하고 참조할 관련사례 부재 등으로 인해 학교·교육기관과 권리단체와의 해석 논란과 이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자료 활용 증가에 따라 교육기관의 저작권 피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실질적인 지식 확보를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2 교사들이 인지해야할 저작권법

교육정보 저작물의 경우,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보다 새롭고 활용 가능한 형태로의 저작활동이 가능하다. Merton은 Newton의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을 통하여 과학에서의 업적이 사회 공통의 유산과 선택

적 누적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22]. 이를 교육정보 활용에 적용하면, 교사들이 수업자료를 만드는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료를 선택, 활용 그리고 새로운 자료의 제작 등으로 이어질 때,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들이 생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정보의 활용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업 및 수업 지원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외에는 교육정보의 활용 또한 저작권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를 향상 발전시킬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도 도모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용에 대한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인용이란 자신의 의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익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자유이용이 허락된 것이다[11]. 즉, 인용은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그 표현 그대로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용을 하면서 수정이나 변경을 했어도 저작물의 기본적인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그 표현의 본질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용이라 할 수 있다[12].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새롭게 저작된 저작물에 자신만의 새로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인용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활용하는 수업자료의 경우, 저작권법이나 인용 등에 대한 규정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법률제정과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법 제 25조 및 시행령 제 9

1) Merton은 Isaac Newton이 1675에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라고 한 것을 인용해서 표현하였다.

조에서 정의하고 있다[25]. 특히 저작권법 제 25조에서는 교육기관의 범위(제 25조 제 2항), 이용목적 및 방법(제 25조 제 4항), 보상금의 지급 등(제 25조 제 4항 내지 제 9항), 그리고 교육기관이 전송하는 경우에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제 25조 10항, 시행령 제 9조)을 포함하고 있다[26]. 이 외에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 25조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제작 및 수업목적상 필요한 저작물 일부분의 이용, 제 28조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 32조 학교의 입학시험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개정 2009. 4.22.> 등이다[26].

이상의 법률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 25조 2항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의 내용이다. 제 25조 제 2항은 해석상의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 교육정보 활용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8][13]. 저작권법 제 25조 2항은 2009년 4월 22일 개정되었고, 4항은 2008년 2월 29일 개정에 2009년 4월 22일에 재개정 되었다. 2009년 개정 법률을 기존의 법률에 근거하여 비교하면 <표 1>과 같다[5][6][26].

<표 1> 개정 전과 후의 저작권법 제 25조 2항 비교

개정 전 →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li> <li>• 교육기관 → 학교</li> <l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li> <li>• 수업목적상 → 수업 또는 수업지원목적상</li> </ul>

개정 법률에 의거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근거가 학교로 축소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기관으로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수업목적상'의 의미가 '수업 또는 수업지원목적상'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해진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 25조 제 2항 '수업목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모호하였고, 이에 대해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수업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은 2010년 8월 25일 교육법령지침으로 명시되었다[7].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에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따라서 교사들은 저작권법의 교육관련 조항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정보 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정보 활용을 위하여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교육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저작활동을 해 본 경험에 근거하여 저작권 관련 지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특히, 교육정보를 활용한 저작활동의 산물들에 대해 본 연구는 교육용콘텐츠<sup>2)</sup>로 명명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업자료를 생성한다. 수업자료 뿐 아니라 학교 연구활동, 학교의 행사 등에서도 교육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이 때, 교사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교육정보는 저작권이 확보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교육용콘텐츠 제작 경험 여부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 수준이 다를

2)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수업 및 수업지원목적으로 제작하는 다양한 저작물들 예컨대, 이미지, 텍스트 파일,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포함하여 수업을 위해 제작된 디지털화 된 모든 저작물들을 교육용콘텐츠로 정의하였다.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는 교육용콘텐츠 제작 경험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교사들이 습득하고 있는 저작권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첫째,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실시한 일반 연수 참여 교사를 추출하였다. 일반 연수에는 저작권 관련 연수도 포함되어 있다. 둘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을 추출하였다. 해당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웹에서 제작된 설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상의 절차에 의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72명이었고, 그 중 설문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거나 무성의한 응답자 23명을 제외한 34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349명 중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73.6%에 해당하는 257명이며, 경험이 없는 교사는 92명으로 26.4%이다. 이 중에서 교육용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교사는 223명, 경험이 없는 교사는 126명이다.

### 3.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학교 교육에서 올바른 교육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사들의 지식수준을 분석하였다. 저작권법 중 교육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에 유권해석을 내린 내용을 토대로 교사들의 지식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문항들은 기존연구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할 때,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지식으로 나타났다[1][7][12][13][21]. 선정된 문항을 토대로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 5인과 현장 교사 10인의 검수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정보 활용 관련 저작권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표 2>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다음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해당 내용들은 수업에서 그리고 학교의 다양한 행사나 연구 등에서 교육정보를 활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지, 혹은 저작권에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구분한 것이다.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수업목적’이나 ‘수업 지원’의 범위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

사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2> 교육정보 활용시 저작권에 대한 지식 수준 측정 문항

교육정보활용 사례	구분	허용/비허용의 근거
정규 수업을 위한 강의 자료 제작에 사용	O	정규수업은 교사와 학생간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능함
정규 수업을 위한 배포용 학습 자료 제작에 사용	O	단, 배포용 학습 자료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양은 원 저작물의 전체이거나 대부분이어서는 안됨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위한 강의 자료 제작에 사용	O	방과후 수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에 의해 '학교장의 감독 하에 교사 및 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라면 수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위한 배포용 학습 자료 제작에 사용	O	단, 배포용 학습 자료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양은 원 저작물의 전체이거나 대부분이어서는 안됨 : 원 저작물의 이익에 해를 미치지 않는 최소한의 경우에 한함
가정에서 개별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 자료 제작에 사용	X	가정에서의 개별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은 정규수업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학교의 중간·기말 고사 등을 위한 시험문제에 사용	O	학교 시험문제에서는 저작물 사용 허락(저작권법 제32조)
학교행사안내, 가정통신문 등에 사용	X	행사 안내나 가정통신문, 자료집은 저작권법 예외조항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용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자료집에 사용	X	
교내 장학연구·전달연수 등 자료집에 사용	X	

O. 저작권 구애 없이 사용 가능, X.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 3.3 분석방법

초등교사들의 저작권 관련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본 연구는 3.2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의 총점을

저작권에 대한 지식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9점 만점으로 교사들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였다. 교사들의 인식 수준을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집단을 저작권 교육 유무와 교육용 콘텐츠 제작 경험자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PC+ 12.0 WIN을 통해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저작권에 대한 지식수준은 단순기술통계를 통해 측정하였다.

둘째, 저작권에 대한 교육 여부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와 교육용콘텐츠 제작 경험에 따른 지식수준의 차이는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셋째, 저작권 관련 각 문항들에 대한 정답율의 비교는  $\chi^2$ 를 통해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결과에서는 저작권 교육 경험과 교육용콘텐츠 제작 경험 등에 따라 실제 수업자료 활용에 관한 저작권 관련 지식이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4.1 교사들의 교육정보 활용 관련 저작권에 관한 지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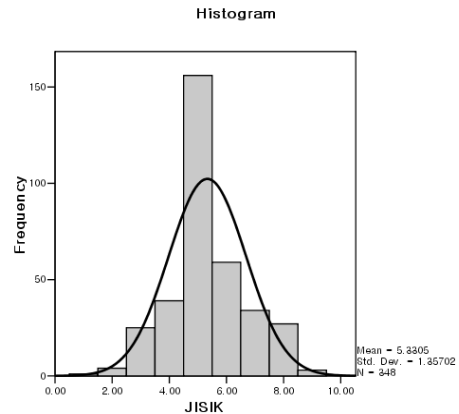
교사들이 교육정보를 활용하여 수업자료를 비롯한 학교 관련 자료들을 생성할 때,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육정보 저작권과 관련하여 9개의 문항을 토대로 총점을 분석한 통계표는 <표 3>과 같다.

<표 3> 교육정보 관련 저작권 지식 통계표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5.33	1.36	5	5 (156명)	1	9

분석결과, 평균은 5.33점이며, 50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중앙값은 5점,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이 획득한 점수는 5점으로 156명으로 나타나났다. 즉, 9개의 문항 가운데, 5.33개 정도에 대해서만 정확한 지식을 지

니고 있었다. 그리고 50% 이상의 교사들이 5개 정도 문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인지하였다. 이를 히스토그램을 통해 정규분포와 비교하면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교사들의 저작권 지식 분포

그림1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규분포와 비교할 때, 6개나 7개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육정보 활용 관련 지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들이 교육정보와 관련된 저작권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교육 등을 통해서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교육용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다양한 자료집의 제작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작권 교육 유무와 교육용콘텐츠 제작경험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 결과는 <표 4>이다.

<표 4> 저작권에 관한 지식의 차이

구분		평균(M)	표준편차 (SD)	t
저작권 교육	有경험	5.39	1.34	1.538
	無경험	5.14	1.39	
교육용 콘텐츠 제작	有경험	5.47	1.34	2.599**
	無경험	5.08	1.35	

\*\* p< .01

저작권 교육여부에 따른 교육정보 활용 저작권에 관한 지식 차이 분석 결과, 저작권 교육 경험자(5.39점), 무경험자(5.14점)에 비해 저작권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교육용 콘텐츠 제작 경험여부에 따른 저작권 지식에서는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본 교사(5.47점)들이 제작경험이 없는 교사(5.08점)들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면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교육정보 활용 저작권 지식이 더 높다고 결론 내린다.

교육용 콘텐츠 제작 경험여부에 따른 저작권 교육 경험이 차이를 나타내는 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이다.

<표 5> 교육용 콘텐츠 제작 경험과 저작권 교육 경험  
단위: 빈도(%)

저작권 교육	교육용 콘텐츠 제작		계
	有 경험	無 경험	
有 경험	181(81.2)	76(60.3)	257(73.6)
無 경험	42(18.8)	50(39.7)	92(26.4)
전체	223(100.0)	126(100.0)	349(100.0)

$\chi^2=18.027, p< .001$

분석 결과,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교사의 81.2%가 저작권 교육에 참여한 반면, 제작 경험이 없는 교사는 60.3%만이 저작권 교육에 참여하여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본 교사들이 저작권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작권 교육여부를 구분하고 교육용 콘텐츠 제작 경험에 따른 저작권 지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교육용 콘텐츠 제작 경험에 따른 저작권 관련 지식

구분		평균(M)	표준편차 (SD)	t
저작권교육 有 경험	교육용 콘텐츠 제작 有 경험	5.53	1.34	2.59**
	교육용 콘텐츠 제작 無 경험	5.07	1.30	
저작권 교육 無 경험	교육용 콘텐츠 제작 有 경험	5.19	1.33	.302
	교육용 콘텐츠 제작 無 경험	5.10	1.45	

\*\* p< .01

먼저 저작권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257명 대상으로 교육용 콘텐츠 제작 경험에 따른 저작권 지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해 본 교사들이 5.53점으로 제작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5.07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저작권 교육 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용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는 교사가 5.19점으로 제작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5.10점에 비해 미약하나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직접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경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체득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 교육정보 활용에서 저작권 지식 수준

<표 7>은 저작권 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콘텐츠 제작 여부에 따라 수업 자료 활용 관련 저작권 지식의 정답률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7> 저작권 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수업 자료 활용 관련 저작권 지식

단위: 빈도(%)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작권 지식	교육용 콘텐츠 제작		$\chi^2$
	有 경험	無 경험	
정규 수업을 위한 강의 자료 제작에 사용	173(95.6)	70(92.1)	1.255
정규 수업을 위한 배포용 학습 자료 제작에 사용	147(81.2)	50(65.8)	7.117**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위한 강의 자료 제작에 사용	124(68.5)	41(53.9)	4.938*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위한 배포용 학습 자료 제작에 사용	104(57.5)	34(44.7)	3.484*
가정에서 개별 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 자료 제작에 사용	95(52.5)	47(61.8)	1.895
학교의 중간·기말 교사 등을 위한 시험문제에 사용	106(58.6)	37(48.7)	3.481*
학교의 행사 안내, 가정통신문 등을 위한 사용	84(46.4)	40(52.6)	.830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자료집에 사용	94(51.9)	38(50.0)	.080
교내 장학연구 및 전달연수 등을 위한 자료집에 사용	75(41.4)	28(36.8)	.470

\* p< .05, \*\* p< .01

저작권에 구매 없이 사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정규수업을 위한 강의자료 제작에 사용'은 교육용콘텐츠 제작 경험자는 95.6%, 무경험자는 92.1%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두 집단 간 의견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정규수업을 위한 배포용 학습자료 제작에 사용'에 대해서는 제작 경험자의 81.2%, 무경험자는 65.8%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응답에 대해서는 제작경험자의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위한 강의 자료 제작에 사용'에 대해서도 제작 경험자는 68.5%가 가능하다고 한 반면, 무경험자는 53.9%만이 가능한 것으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위한 배포용 학습자료 제작에 사용'에 대해서도 제작 경험자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학교의 중간·기말 고사 등을 위한 시험문제에 사용' 또한 제작경험자들은 58.6%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무경험자들은 48.7%가 가능하다고 하여 두 집단 간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의견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은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용콘텐츠 제작경험 여부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해당 저작물의 사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표 8>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의 수업자료 활용관련 저작권 지식

단위: 빈도(%)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작권지식	교육용콘텐츠 제작		X <sup>2</sup>
	有 경험	無 경험	
정규 수업을 위한 강의 자료 제작에 사용	38(90.5)	46(92.0)	.067
정규 수업을 위한 배포용 학습 자료 제작에 사용	30(71.4)	39(78.0)	.526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위한 강의 자료 제작에 사용	19(45.2)	30(60.0)	1.998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위한 배포용 학습 자료 제작에 사용	18(42.9)	25(50.0)	.468

해당 내용에 대한 저작권지식	교육용콘텐츠 제작		X <sup>2</sup>
	有 경험	無 경험	
가정에서 개별학습을 위한 온라인 학습 자료 제작에 사용	26(61.9)	25(51.0)	1.088
<b>학교의 중간·기말 고사 등을 위한 시험문제에 사용</b>	23(54.8)	31(62.0)	.493
학교의 행사 안내, 가정통신문 등을 위한 사용	26(61.9)	17(34.0)	7.140**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자료집에 사용	23(54.8)	29(58.0)	.097
교내 장학연구 및 전달연수 등을 위한 자료집에 사용	15(35.7)	15(30.0)	.339

\*\* p< .01

의견 분석 결과, '학교의 행사 안내, 가정통신문 등을 위한 사용'에 대해 제작경험자들은 61.9%, 무경험자들은 34%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학교의 행사 안내나 가정통신문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교육용콘텐츠 제작경험이 없는 집단의 정답 비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견 차이를 나타내었다.

### 4.3 교육정보의 필요에 대한 요구

<표 9>는 저작권에 구매 없이 교사들이 수업이나 연구 활동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희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교육용콘텐츠 제작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서 4.62점을 나타내었고, 무경험 교사들은 4.44를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육용콘텐츠를 제작해 본 교사들은 교육정보자유이용체제를 통해 저작권이 확보되기를 희망하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 교육정보의 필요에 대한 의견 차이

교육용 콘텐츠 제작	평균 (M)	표준편차 (SD)	t
有 경험	4.62	.56	2.816**
無 경험	4.44	.59	

\*\* p< .01



세부적으로 교육정보자유이용체제에서 교사들이 희망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클립자료나 오피스 문서’에 대한 요구가 다른 교육정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필요성에 대해 교육용콘텐츠 제작경험이 있는 교사는 4.70점, 제작경험이 없는 교사들도 4.53점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제작경험에 따라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임의로 가공은 할 수 없지만 제시된 그대로 원형의 변형 없이 사용 가능한 디지털 클립자료나 오피스 문서에 대해서 경험자들은 3.78점, 무경험자들은 3.47점을 보이면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교육용 자료에 대한 요구도 교육용콘텐츠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0> 교육 정보자유이용체제에서 희망하는 교육정보의 차이

교육정보자유이용체제 희망 자료	교육용콘텐츠 제작		t
	有 경험	無 경험	
별도의 수정이나 가공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동영상	4.60(.64)	4.61(.61)	.056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클립 자료나 오피스 문서	4.70(.50)	4.53(.62)	2.722**
임의로 가공할 수 없고 그대로만 사용가능한 디지털 클립자료나 오피스 문서	3.78(1.03)	3.47(1.07)	2.634**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용 자료	4.48(.70)	4.25(.82)	2.121*

\* p< .05, \*\* p< .01

5. 결론 및 논의

교사들이 학교수업을 위해 제작한 수업자료들을 다른 교사와 함께 공유하고 해당 자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들의 올바른 교육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에 대한 지식 수준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을 비롯하여 교사들의 저작활동 시 자료의 올바른 사용 현황과 정보이용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349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정보 활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 보다는 직접 교육용콘텐츠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저작권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작권교육 보다 교사 스스로 교육용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체득한 지식이 오히려 더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작권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용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없는 교사들의 저작권 지식이 저작권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용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용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업자료에 대한 저작활동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저작권에 대한 지식도 많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저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에 대한 요구도 더 많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할 때,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교육용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연수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저작권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 활용하지 않는다면 교육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용콘텐츠 저작 교육 등에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함께 병행한다면, 저작활동을 위해 교육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모든 교과에서 수업자료를 제작해야 하는 초등교사들의 교육정보를 활용한 저작활동을 지원하고, 양질의 수업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정보에 대한 저작권 지식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한편, 중등교사들의 저작활동에서 저작권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연수 등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이 저작한 수업자료를 공유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저작권이 확보된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의 활발한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호갑(2008), 교육기관 및 도서관의 기술적보호 조치 등에 관한 연구, 기술적보호조치와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표준화 연구, 서울: 저작권위원회.
- [2]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0), 2009 교육정보화백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3] 김기중(2007), 저작권제도의 이해 - 역사적 접근, 2007 교육정보 저작권 포럼,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4] 김현철, 이원규, 김자미, 김민하, 박상미(2009), 우리가 가꾸는 건강한 정보문화,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5] 대한민국 저작권법 2009년 7월 31일 법률 9785호 ‘일부 개정’.
- [6] 대한민국 저작권법 시행 : 2008. 2. 29, 법률 제 8852호
- [7] 문화체육관광부(2010), 저작권법 제 25조 제 2항 ‘수업목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교육법령지침, 2010년 8월 25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8] 박정호(2010), 교육정보 자유이용체제 구축방안 연구, 2010 교육기관 저작권 실무자 워크숍 자료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9] 송재신, 장의덕, 안효륜, 김자미, 안태숙, 한재성 (2009), 2009년도 에듀넷 활용실태·효과 분석,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10] 안성경(2008), 이러닝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 :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0-2, 71-95.
- [11] 오승중(2007),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12] 윤태영(2009), OER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해외 동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 대학정보화 최신 동향 분석 자료집, 139-170.
- [13] 이규호(2010), 학교교육을 위한 공정이용 방안, 2010 교육기관 저작권 실무자 워크숍 자료집,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14] 이두영, 황옥경(2003),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동향 : 자유이용을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4-2, 1-23.
- [15] 이지연, 민지연, 주수형(2007), 국가지식정보의 유통현황 분석 및 유통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3, 299-319.
- [16] 저작권보호센터(2009),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서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 [17] 정경희(2007),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정책과 오픈액세스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4-3, 97-117.
- [18] 채명기, 이영수, 김혁진(2010), 저작권 이해,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19] 최성우, 이재경, 김환식(2002), 평생교육 구현을 위한 공공 교육정보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정보방송연구, 8-4, 1-30.
- [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7),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1]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22] Merton, Robert C.(1973), An Intertemporal capital asset pricing model, *Econometrica*, 41(5). 867-887.
- [23] 강정만(2010). “제주도교육청, 저작권 보호 위한 교육실시”, 『뉴스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249212>
- [24] 경수현(2010). “저작권 연구학교 50개교로 확대”,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92662>.
- [25]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27, 타법개정]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http://www.law.go.kr/>.
- [26]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저작권법[시행 2010. 2. 1] [법률 제9785호, 2009. 7.31, 타법개정], 제 25조 <http://www.law.go.kr/>.
- [27] 김연정(2009). “검사도 속을 뻐한 교사 상대 ‘저작권 사기극’”, 『연합뉴스』, [http://www.hsydney.com/?doc=bbs%2Fboard.php&bo\\_table=topic&sselect=ca\\_id&stext=3&ssort=ca\\_id&sorder=desc&soperator=&page=1&wr\\_id=1898](http://www.hsydney.com/?doc=bbs%2Fboard.php&bo_table=topic&sselect=ca_id&stext=3&ssort=ca_id&sorder=desc&soperator=&page=1&wr_id=1898)

- [28] 김현섭(2009). “가정통신문도 저작권법 걸린다”,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07844>
- [29] 이수운(2009). “문지마식 저작권 소송 \_선생님까지 고소”,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portal=001\\_00001&id=200906300261](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portal=001_00001&id=200906300261)
- [30] 이정환(2010), “저작권은 창작의 무덤.. 우리를 범죄자로 몰지 마라”, 미디어 오늘,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891.html>
- [31] 전자신문(2009) “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도 필요하다”,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6300297>

**저 자 소 개**



**김 자 미**

1992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1995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문학석사)  
 2009년~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교육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교육정보화 평가, 이러닝  
 jamee.kim@inc.korea.ac.kr



**박 정 호**

1987년 2월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공학석사)  
 1998년 8월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통신공학박사)  
 1987년 1월~1992년 5월 삼성종합기술원 전자기기연구소 주임연구원  
 2004년 3월~현재: 서울디지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정보통신, 컴퓨터교육  
 martinpark@paran.com



**이 원 규**

1985년 2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문학사)  
 1989년 2월 筑波大學 大學院 理工學研究科(공학석사)  
 1993년 2월 筑波大學 大學院 工學研究科(공학박사)  
 1993년~199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책임연구원  
 1996년~현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정보검색, 데이터베이스  
 lee@inc.korea.ac.kr